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시 정 요 구

제 목 해삼가공설비 보조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 소홀

기 관 명 충청남도 태안군

내 용

충청남도 태안군에서는 지역 특화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위한 고부가가치 가공산업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아래 [표1]과 같이 2015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의 일환으로 ‘해삼저온건조공건조시설지원 사업 (국비 25%, 지방비 25%, 자담 50%)’을 선정하여 2015. 12. 14. 시설 설치를 완료 하였다.

[표1] 해삼저온건조공건조장치 시설사업 현황

보조사업자	사업비(백만원)				사업기간
	계	국비	지방비	자담	
○○○○○○○○○법인 (대표 ○○○)	440	110	110	220	‘15.8.20.~’ 15.12.14.

「조세특례 제한법」 제105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농민,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(이하 이 조에서 “농어민등”이라 한다)이 농업·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¹⁾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

1)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(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·임·어업용 기자재의 범위)

<별표 6> 어업용기자재

- 양어장 필름, 양어장용 파이프, 수산물건조기, 어업용발전기, 자동조타장치, 구멍 부기·동의 등 29종류

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

그리고 2015년 당시 「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(해수부 훈령 제201호)」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시·군에서는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되, 다만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업집행지침에서 채투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.

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을 완료한 후 정산 시 보조금 집행 사업비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사업비에서 공제 여부를 확인하여 환수하여야 할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정산을 통해 국가 등에 반납하여야 한다.

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[표2]와 같이 2015년도 해삼저온진공건조장치 시설사업으로부터 발생한 부가가치세액 40백만원을 사업완료 후 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공제하지 않고 사업비를 정산하였다.

[표2]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환수 내역

<단위 : 백만원>

연도	보조사업자	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	사 업 비			미환수액 (국비분)
			합계금액	공급가액	세액	
2015	○○○○ 영어조합법인	해삼저온 진공건조시설	440	400	40	10

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태안군수는

[시정]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비 정산 시 공제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속히 환수 및 반납조치 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